

과태료, 납부 방법은 편하게 서민 부담은 가볍게 바뀐다

- '17. 6. 3. 과태료의 신용카드 납부 등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시행 -

과태료 납부는 편리하게 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는 내용의 개정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이 2017. 6. 3. 시행됩니다.

□ 주요내용

○ 신용카드·직불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

-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금융결제원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음

○ 과태료 분할납부·납부기일의 연기 규정 마련

- 과태료 부과 당사자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, 장애인,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,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,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, 실업급여수급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신청 가능
-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9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 결정 가능

※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3개월 범위 내 한차례 연장 가능

○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

- ‘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’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가능

- ①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- ②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
 - ㉠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 - ㉡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 - ㉢ 자활사업 참여자
- ③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
- ④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
- ⑤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
- ⑥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 등으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람
- ⑦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
- ⑧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
- ⑨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
- ⑩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
- ⑪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

【법무부 법무심의관 검사 이시전 ☎ 02)2110-3504】